성학대 보호명령의 송달 또는 만료에 관한
전자통지서를 받는 신청인에게 알림

:

다음의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:

- 당신은 당신의 성학대 보호 명령이 발급된 카운티의 보안관 사무소에 당신의 이 메일 주소 및/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이미 제공했습니다. 그래서 당신의 보호명령이 송달되었을 때 전자 통지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명령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또한

- 당신은 당신의 이 메일 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했습니다.

아래의 정보는 성학대 보호 명령을 받은 곳에 있는 보안관 사무실에 제공되어야 합니다.

이 양식은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.

만약 당신의 연락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, 당신은 이 명령을 받은 법원에 따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.

공통적으로 이 양식을 사용할 때는 당신이 당신의 보호명령을 **갱신**하거나 **변경**할 때와 당신의 이 메일 주소나 보호명령이 변경되었을 때입니다. 그러나 이 양식은 성학대 보호명령이 유효할 동안은 당신의 이 메일 주소나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고 아직도 송달 유효기간 만료에 관한 전자통지를 보안관 사무실에서 받기를 원할 때는 **언제든지** 사용해야 합니다.

이것은 자발적입니다—당신은 의무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***당신은 의무적으로 전자통지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.***

신청인이 보안관 사무실에 보내는 연락정보 변경 사항

신청인의 이름: _____

피 신청인의 이름: _____

법원의 사건번호: _____

명령을 받은 카운티: _____

당신의 휴대전화 번호: _____

당신의 휴대전화 회사 (ATT, Verizon, 등): _____

당신의 이 메일 주소: _____